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5. 2.(수) 09:3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20-111)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의결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아이핀 폐지에 따라 민간아이핀 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온라인에서 아이핀 발급 시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8년 2월 21일에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18년 2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와 ‘18년 3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뒷장 주요내용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자료 확인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18년 7월부터 발급을 중단하고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아이핀에서 수행하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기능을

민간아이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를 위해서 법제처에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지난 2월에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한정된 현행 개인정보수집·이용 획득 방법에 관해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번 안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것들을 법제처에서 함께 모아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획득 방법을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로 개선하는 것은 규제 시스템 전환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제처에서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의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방송관계 법률상 신고제, 인가제 그리고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령정비 주요 내용은 신고제의 경우에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구분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과도한 결격사유를 합리화하고 신청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인가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한 시에는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고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방송법과 전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방송법상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와 휴·폐업 신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 이 신고조항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저희 행정청이 이 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과 결격사유 같은 경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가 간주제 도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정관 변경할 때는 저희가 인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 미비된 부분으로 민원의 처리 기간과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결격 사유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방송법상 행위무능력자나 파산으로 인해서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저희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결격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이것을 신청하면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가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전체적인 법령 정비 추진 방향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규제의 명확화 그리고 또한 결격사유의 합리화,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의결주문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경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거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자 이익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우리 위원회의 관리 감독 권한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시도 같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도 되지만 항상 법이 제·개정되면 하나를 폐지해 놓고 2~3개가 신설된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법제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실효된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규제총량제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규제기관입니다만 필요한 규제는 명확하게 하되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은 우리가 헌법적 가치로 꼭 보장받고 보호해야 할 언론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보도 유의사항, 권고사항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지침을 내리고,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보도지침, 사전검열이 아닐 수 없고,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방심위는 사후 규제만 할 수 있지, 사전 통제까지 한다면 명백히 월권이자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루 전에 경찰이 드루킹 파문보도와 관련해서 TV조선을 압수수색하려 해서 ‘언론 탄압이다’ 이런 논란이 일어났고, 한국기자협회 반발 성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발표가 있어서 언론자유 침해라는 우려를 부채질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는 방심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았고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의 일방적 보도지침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과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방통위원회가 이 같은 보도지침이 나온 데 대해서 세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정부 발표대로만 보도하라는 지침을 방심위가 내릴 때 방통위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

이런 향간의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방심위의 월권이 확인된다면 우리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사무처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당장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주에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20계단을 상승해서 43위를 기록하며 미국보다 언론자유를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처에서 정부의 언론통제, 언론자유 침해가 발생한다면 이 같은 언론자유지수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처에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MBC 공영방송에서는 정권 편향적 보도나 방송프로그램으로 연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새 사장 부임 직후에 KBS 13개 뉴스프로그램 앵커는 전원 언론조합원이 맡고 언론노조와 반대편에 섰던 직원들은 보직에서 제외되는 인사발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복인사, 코드인사가 공영방송 내부에서 보란 듯이 이루어지고, 시사프로그램,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반대편 주장은 무시한 채 일반적인 편파 주장으로 채워져 방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지상파 메이저 3개 방송 모두 같은 실정입니다. 한쪽 진영 주장에만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을 편을 가르는 행위가 될까 봐 극히 우려됩니다. MBC에서는 전임 사장 시절의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과거 자사 보도를 이유로 자사 기자들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언론사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데 오히려 앞장을 서고 취재원의 보호라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스스로 내팽개쳐지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일도 역시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가 나는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보도 논조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C처럼 자사 기사를 비판하고 바로 취재기자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참 심란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방송이 균형보도, 공정보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방송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찌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경없는 기자회’의 그 발표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에 대해서 이른바 보도지침으로 인식될 이런 경고사항 발표 경위와 진상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심위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찌됐든 이런 논란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석진 위원님의 사무처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편성해 주고 그리고 심의 결과, 법정제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시다만 엄밀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위파악이나 진상조사, 이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처에 요구를 해도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방심위의 월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방심위에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진상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신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설사 추측이라도 우려스러운 것이 '방통위가 방심위의 보도자료 배포에 혹시 관여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근거도 나오지 않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기관은 엄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으로서 방통위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개별 위원님들의 기타 발언시간에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김석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항간에는 방심위가 예산도 우리가 주고 있고 방심위에서 어떤 결정 사항이 나면 행정 집행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개입했다, 내부 조사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무처에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시중에서는 그렇게 방심위와 방통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구분을 못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사무처가 방심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단 경위는 파악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방통위는 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언론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이런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 광의로 해석하면 언론자유를 수호하는데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라는 것도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발표가 이루어진 바로 그 주에 발표 하루 전, 발표 다음 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의 그런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이미 다 그렇게 규정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처리된 과정은 일부 위원에게 구두로 보고되면서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언론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은데 '항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방통위의 관여 여부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전체회의에서 저희 방통위 직무와 관련된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특히 언론자유 문제, 그리고 방송사의 독립성·자율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인사 문제들을 지난번에 이어서 또 거론하시는데 방송사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송사, 또는 방송사 경영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특정 방송사 같은 경우 인사 기술상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또는 기타 발언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령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심의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운영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그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직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낸 보도자료가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자체적으로도 방심위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TF를 짜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와 또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후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논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9시 58분 폐회 】